

# 베넬룩스의 統一意匠法



李 鉉 澈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調査檢索部長〉

베넬룩스의 3개국인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사이의 工業的 디자인 및 모델에 관한 統一法の 도입을 위한 條約은 1974年 1月 1日부터 發効되었고, 이어서 이른바 베넬룩스 統一意匠法이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이 3개국의 統一意匠法の 시행에 따라, 이미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던 베넬룩스 統一商標法の 경우와 같이 이들 3개 나라에 각 나라마다 出願하는 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어 있는 베넬룩스 意匠局에 單一로 出願함으로써만 취득되게 되었다. 즉, 단일의 출원에 따라 이들 3개 나라에 동시적으로 또한 강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단일의 意匠登錄이 얻어지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이 法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부분만을 골라서 설명하고자 한다.

## 1. 保護의 對象

이 統一意匠法에 의해서 保護받을 수 있는 것은 使用상의 機能을 가진 物品의 外觀에서도 新規인 것만이다. 規定 중에서 디자인이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는 織物·布綿·壁紙 등을 지적하고 있다. 모델의 設計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繪畫는 “모델”의 概念 속에 포함되어 있다. 使用상의 機能이 요구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장식

적인 디자인의 保護는 이 法에서 제외되고 있다 (第1條).

기능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本法에 의한 保護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또한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디자인도 역시 이 法에서는 保護가 제외되고 있다(第2條).

## 2. 權利의 設定

모델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베넬룩스 意匠登錄局에다 먼저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된다(第3條).

특히, 出願함에 있어서는 이 베넬룩스 意匠登錄局 이외에도, 세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國內 工業所有權局 또는 제네바의 國際局에도 寄託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3. 新規性的 要件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出願할 당시 新規가 아니면 안된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모델과 유사하거나, 또는 出願한 날, 또는 優先權을 주장한 날로부터 50年間 이전에 이미 베넬룩스의 3개국 領域 안의 當業者에게 알려져 있는 것에는 新規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第4條).

## 4. 權利의 消滅

登錄無効이거나 取消되는 것 이외에, 모델에

관한 독점적 권리는 자발적인 포기이거나 또는 베네룩스의 統一意匠法에 의한 登錄의 保護期間의 만료에 의해서만 소멸하게 된다(第7條).

### 5. 出願의 要件

보호받고자 하는 모델의 寫眞이나 圖面을 願書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희망에 따라서는 色彩 및 디자이너의 이름을 표시할 수도 있다. 出願할 때, 또는 출원한 다음 1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선권은 소멸하게 된다(第8條).

### 6. 無審査

出願은 베네룩스 意匠登錄局에 의해서 出願되자마자 곧 登錄되며, 新規性·사용상의 機能 및 가능한 기술적 효과에 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第9條).

### 7. 公 告

秘密意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그 대신 出願人은 出願한 날로부터 12개월 또는 우선권이 出張되어 있을 경우는 우선권을 주장한 날로부터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기한 내에서 공고의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第10條).

### 8. 存續期間

登錄은 出願한 날로부터 5年間 존속되며, 또한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前年 중에 登錄料를 지불함으로써, 계속하여 5년간씩 2회를 更新할 수 있다. 따라서 最長保護期間은 15년간으로 그 동안은 존속될 수 있다(第12條).

### 9. 讓渡 및 라이선스(實施許諾)

모델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를 허락할 수도 있다. 書面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生存者間의 양도(實施許諾) 및 베네룩스 3개 나라 全領域에 관계되지 않은 양도는 無効다. 양도·移轉 및 라이선스의 實施許諾은 베네룩스 意匠登錄局에 등록되지 않으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第13條).

### 10. 模倣과 侵害

1 모델의 適法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등록된

모델과 똑같은 外觀은 갖거나, 또는 약간의 相違만을 나타내는 物品의 工業的이거나 商業的인 의도에 의한 製造·輸入·販賣를 위한 供給·展示·使用 등과 또는 이러한 것들의 목적 중의 하나를 위한 貯藏하는 행위에 대해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侵害한 사람이 미리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 이의는 禁止行爲의 한 가지에 대한 損害賠償은 登錄公告된 날로부터만 청구할 수 있다.

### 11. 先使用權

모델의 適法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델의 出願한 날 또는 우선권을 주장한 날 전에 登錄된 모델과 똑같은 外觀을 갖고 있거나, 약간의 상위만을 나타내는 物品을 製造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의 禁止行爲에 대해서는 輸入을 제외하고 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第3者에 대해서는 이른바 先使用權을 認定에게 된다(第17條)

\* 先使用權(license based on prior use)이라 함은 出願 전에 이미 그 發明·考案 또는 意匠과 이것과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하고 있었거나, 실시할 準備를 하고 있던 善意的 第3者가 그 發明·고안·의장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부터 자유로이 그 發明·고안 및 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先使用權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實施權으로서 별도의 契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無償의 法定實施權으로 登錄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취득한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者에게 대항할 수 있다.

### 12. 經過規定

베네룩스의 세 나라 가운데 이 統一意匠法 이전부터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던 나라는 벨기에뿐이었으나, 統一意匠法에서는 그 經過規定으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벨기에에서 시행되던 工業 디자인은 계속해서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第25條).

또한 1975年 1月 1日 이전에 벨기에에 등록되어 있던 意匠權의 소유자들은 그 권리의 보호를享有하기 위해서는 이 統一意匠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75년 12월 31일까지 벨기에

의 工業所有權廳에 확인의 寄託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것을 실행치 않은 자는 197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끔 규정하고 있다(第26條).

위에서 말한 대로 벨기에 이외의 나라인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는 統一意匠法의 施行 이전에는 意匠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統一意匠法의 施行에 의해, 이미 西獨이나 英國·프랑스 등의 나라들에서 보호받고 있던 의장들이 새로이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에서 보호받기 위해 出願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a) 베넬룩스 地域內의 工業·商業界에서 알려졌거나, 또는 公告·登錄된 것은 벨기에에 確認寄託된 것 이외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b) 그 반면에 세계의 어느 곳에서 알려진 의장이라도 베넬룩스 3개국의 지역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出願될 수 있다.

c) 베넬룩스 지역에서의 Trade Mark는 包裝의 形狀·外觀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이 포장으로 사용될 경우는 Trade Mark로서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장은 15년으로 만료되는데 비해 Trade Mark는 영구히 登錄料만 지불하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d) 1975년 1월 1일 이후는,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해서, 未登錄 디자인의 侵害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未登錄 디자인의 所有者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으로, 실제로 베넬룩스 3개국에서 의장을 보호받으려면 등록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것이다.

## 工業所有權實施案內

會員 상호간이나 또는 非會員이라 할지라도 權利의 讓受渡, 實施許諾의 의사가 있는 工業所有權(出願 중도 包含함)의 本誌 掲載을 환영합니다.

本會는 날로 발전하는 새 技術의 交流와 活用을 촉진하고자 本欄을 設置開放하게 되었으므로 기탄 없는 이용을 바라면서 寄稿要領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料 金: 無料
2. 掲 載: 接受順
3. 接受處: 本會事務局發明獎勵部 電話 25-2830, 26-5978
4. 其 他: 寄稿된 原稿는 本會에서 適宜 整理함.

다음은 本會에 접수한 實施幹旋依頼된 것을 요약해서 수록한

### 1. 카야드첩의 투명봉투

- 1) 考案者(登錄權者): 서울 龍山區 靑坡洞 2街 35의15 이 규 상
- 2) 登錄番號 및 日字: 實用新案 登錄第10950號(1974. 6. 19)
- 3) 考案의 內容: 本考案은 카야드를 손쉽게 카야드帖 봉투에 삽입할 수 있으며 카야드첩을 거꾸로 들어도 빠져 나오지 않게 한 것으로 중전의 카야드 保管帖은 보관봉투의 開口部가 몸체와 같이 일정한 너비로 되어 있어 얇은 카야드나 原紙 등을 보관할 때 봉투의 開口部를 벌리면 폭이 좁아져서 카야드를 삽입하기 곤란할 뿐더러 카야드첩을 거꾸로 들면 카야드

가 빠져나와 불편하였다.

그러나 本考案은 이러한 결점을 개선하여 고안한 것으로 봉투의 開口部 양측 일부만을 남기고 면을 接着한 봉투의 개구부측에 接觸하지 아니한 內部面에 開口가 봉투 내부로 향하게 접어서 만들어진 투명 봉투이다.

### 4) 考案의 特徵

- 가) 郵便봉투로 사용할 수 있어 官公署나 公共機關에서 봉투 하나로 數回使用함으로써 用紙節約에 기여할 수 있다.
- 나) 住民登錄票나 人事記錄 카야드 등 保管用 書類에 사용할 수 있다.
- 다) 봉투에 總天然色 오프셋 印刷가 가능하여 企業에서 선전용에 이용할 수 있다.
- 라) 防水 효과가 있다.